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합105584(본소), 2022가합105420(반소)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등 · 매매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김이진, 서정식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일 담당변호사 진병권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40,000,000원 및 이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slitter machine, wrapping machine, label machine)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 및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20. 5. 21. 피고와, 피고로부터 마스크 생산 기계 4대를 800,000,000원에 구매하고 피고가 이를 제작,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설비 구매 계약서

제1조[계약 명칭] : 3D 마스크 생산 기계 4대 제작 및 설치

품명 : 1단 2열 KF94 타입 MASK 설비

제2조[계약 범위 및 납품기일]

계약범위 : 설비제작, 설치, 시운전, 시제품 생산

납품기일 : 2020. 6. 15.

제3조[설치장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

제4조[계약금액 및 대금결제]

항목	금액	대금 결제
총 계약금액	8억 원	2억 원/대, (총 4대)
선금금(50%)	4억 원	계약서 작성 후, 현금(VAT 별도)
잔금(50%)	4억 원	설치 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 현금(VAT 별도)

제5조[납품]

가)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 및 일자에 계약물품을 인도 후 “갑”의 승인검사를 득하고 최종 인도 장소까지 책임을 진다.

나) 인도 장소까지의 운송에 따른 소요비용 일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검수]

가) “을”은 제작 설비에 대해 “갑”의 입회 하에 시운전을 하며 “갑”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분당 60개 귀 끈이 융착된 마스크가 생산되어야 한다.

제8조[품질보증]

가) 보증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보증한다.

나) 품질 보증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은 문제를 해결한다.

다) “갑”의 과실로 인한 문제는 “갑”과 “을”의 협의 후 해결한다.

제10조[시운전]

가) “을”은 설치 시운전을 “갑”의 지정장소에서 실시한다.

나) “을”은 “갑”에게 장비운영에 필요한 운용교육을 5일간 실시한다.

다) “을”은 시운전 및 테스트용 마스크 원자재(원단, 필터, 귀끈, 코와이어)를 “갑”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해지]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때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상기 “갑”의

설비를 “을”이 제작 불가능 할 때, 설비 검수 완료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하지 않을 때 “갑”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나)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갑”에게 계약금을 배상한다.

제13조[기타]

설비 발주후 생산전까지 생산 물량(1억장)에 대한 발주 및 계약이 완료되어야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상관관계에 따른다.

다. 피고는 2020. 8.경 제작된 마스크 생산기계 4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원고가 지정한 장소인 충주시 D 소재 공장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납품기일인 2020. 6. 15.를 경과한 2020. 8.경에 이 사건 기계들을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였고, 이 사건 기계들에는 중대한 하자들이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원고의 하자보완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2020. 9.경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해제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마스크 1억 장에 대한 발주·계약 체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 또는 2022. 8.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재차 해제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계들을 임차료 8,8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20. 9.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1. 4.까지 8개월 동안 보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7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금 400,000,000원을 반환하고 보관료 70,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7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합의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물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가 2020. 9.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의 하자에 관한 보완 요구가 기재된 이메일을 받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 원본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위탁받아 마스크 생산업무를 진행하기로 한 E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타인에게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E의 위 증언은 피고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원고 측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400,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인 E의 관련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합의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제11조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계약 제11조는 원고와 피고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1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나)항에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1조 나)항의 내용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사건 제11조 나)항의 해제사유는 특유의 해제사유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달리 법정해제권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문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각 채무불이행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납품기일 미준수 관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인 2020. 6. 15.를 경과한 2020. 8.경 이 사건 기계들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계약서상 납품기일은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위 납품기일을 연장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기계들의 하자 관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들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여러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의하면, 피고는 귀 끈이 융착된 마스크를 분당 60개 생산하는 기계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기계들이 설치된 이후 시운전이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여러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최종적으로 2020.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에 다음과 같은 하자1) 등이 잔존하고 있으니 이를 보완해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1. Un-Winder - 5) 제품 잔량 감지 및 부저 동작 기능 없음

2. cutting & welding - 8) edge scrap roll에 말림 -> 생산 불가

9) 마스크 center 주름 발생

4. 마스크 컨베이어 이송 - 2) 마스크 안착후 이송시 이탈_임시 테이프 부착

5. 귀끈 부착 - 서브모터 적용 검토(정밀하게 이동하여 부착 필요함)

1) 귀끈 DC Motor 제어 저하

2) 마스크 안착 불안정 및 융착전 Hunting

3) 귀곤 걸림 및 위치 틀어짐

4) 실린더 stop bar 제질 변경

5) gear bolgt 풀림(10분 가동시) 및 위치 이탈

7. 마스크 적층 - 2) 마스크 완제품 적층 안됨

3) 컨베이어 없음

③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들로 인하여 마스크 불량품이 다수 발생하고 분당 60매의 마스크도 생산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위 보완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계약서 원본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시운전시 발생한 문제점과 원고의 요구사항을 거의 대부분 보완했고 분당 60매의 마스크 생산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계약서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2020. 9. 7.자 이메일을 받은 후 원고에게 그러한 하자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2020. 9.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였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당시 작성하여 교부받은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해 일응 수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서를 반환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이용한 마스크 생산 업무를 위탁받은 E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분당 40매 정도만 생산되었고 불량률이 40~50%에 이르렀으며 하자가 보완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계들은 하자가 있어 분당 60개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영상 또는 기재는 이 사건 기계들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영상이 아니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실확인서에 불과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마스크 계약 체결 관련 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들을 이용한 마스크 생산 시작 전까지, 원고가 마스크 1억 장을 발주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마스크를 주문할 수 있는 회사(F)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제13조는 이 사건 기계들을 통한 마스크 생산 전에 1억 장의 생산물량에 대한 발주 및 계약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F 사이에 마스크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가 원고의 1억장 마스크 공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제권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들의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이행지체에 대해 위와 같은 최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비록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해제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들이 납품된 이후에 납품기일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들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정한 성능 즉 분당 60개의 (판매가능한) 마스크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제조 시간이 길어지고 불량품을 가려내야 하는 등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원고가 마스크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의 마스크 발주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계약 제13조는 계약서의 마지막에 ‘기타’ 조항으로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들을 구매한 것이 결국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중개의무는 이 사건 기계들의 제작 및 설치 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고의 영업목적에는 기계제작과 장비수출업, 부동산 임대업 등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나 마스크 생산·판매는 원고의 기존 영업목적 어디에도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계들의 객관적인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위 중개의무가 계약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기계들을 통한 마스크 생산 전에 마스크 1억 장의 계약을 완료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원고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업 기반이 되고 원고는 마스크 1억 장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들의 계약금액 800,000,000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의 위 각 채무불이행은 주된 채무에 대한 것으로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가 2020. 9. 7.경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하자 보완 요구를 원고로부터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는 2020. 9. 말경 원고에게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였고 이후에도 하자 보완이나 수주 활동 등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것을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1. 5. 6.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을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3) 원상회복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1. 5.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들을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2020. 7. 3. 주식회사 G으로부터 충주시 D 소재 공장을 보증금 90,000,000원, 차임 매월 8,800,000원(선불로 매월 10일 지급), 기간을 2020. 7. 10.부터 2022. 7. 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0. 9.부터 2021. 4.까지 8개월의 차임 합계 70,400,000을 주식회사 G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차임 합계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7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1. 5.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8. 초순경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고, 피고의 직원을 상주시키며 설비 설치 및 시운전 준비를 하였으며, 피고의 협력업체 직원들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운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원고가 요구하는 수정사항을 거의 대부분 보완하는 등 원고의 지적인 하자 대부분 보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을 통한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본소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풍, 판사 정종건, 판사 이학인

1) 하자를 중요도에 따라 1~3순위로 분류하였는데, 위 표의 하자는 그 중 1순위에 해당하는 하자 중 일부이다.